

닭도축장에 대한 HACCP 적용

김 대 균 사무관
국립수의과학검역원

I. 개요

1. HACCP의 기본개념

- HACCP는 축산물작업장에서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, 화학적, 물리적 위해요소분석(HA) 후 주요 단계에 중요관리점(CCP)을 설정하여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·체계적인 위생관리기법

※ HACCP : Hazard Analysis Critical Point

- 구성

HA (위해요소)	생물학적 위해요소	화학적 위해요소	물리적 위해요소
요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E.coli 0157 Salmonella enteritidis Listeria monocytogenes 기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농약 살충제 항생제 호르몬 중금속 등 	금속 유리 등
CCP (중점관리점)	위해요소를 예방, 제거 또는 허용가능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지점 또는 단계		

2. SSOP 기본개념

- SSOP(위생관리기준)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작업장 등에서 영업자나 종업원이 작업전·작업중 및 작업 후에 축산물의 직접적인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관리사항을 위생관리 기준서로 작성하여 준수하고 관련 내용을 작성·비치하는 작업장의 자주적인 위생관리 기법

※ SSOP :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

- SSOP는 선진 위생관리 기법으로 적용 대상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HACCP 시행의 전제조건인 선행요건 프로그램임.
-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도축장, 축산물가공장에 대하여 의무 적용하고 있으나, 법률개정을 통하여 축산물운반업, 축산물판매업에 대하여도 의무적용 계획

II. 도축장·축산물가공장에서의 적용

1. 지정현황

(2003년말 현재)

구분	도축장			가공장	
	소·돼지	닭	오리	식육	유제품
전체(A)	111개소	51	(7)	-	-
지정(B)	72	33	1	66	31
도축물량 (A/B, %)	소 81% 돼지 91%	88%	자율	자율	

2. HACCP 지정 법적 근거

1) HACCP 법적 근거

- 1997. 12.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HACCP 근거 규정 신설
 - HACCP 적용 근거 및 도축장에 대한 적용 의무 부과
- 1998. 8. 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(HACCP) 고시
 - 도축장 : 2000. 7. 1부터 2003. 6. 30까지 연차적 의무 적용
 - 가공장 : 희망업체별 자율 적용
- 2002. 9 고시 개정(6차 개정)
 - 가공장 적용품목 확대(9개 품목 → 13개 품목)
(기존) 햄류, 소시지류, 포장육, 우유류, 발효유류, 가공치즈, 자연치즈, 가공유류, 버터류 → 추가) 양념육류, 분쇄가공육제품, 저지방우유류, 아이스크림류
- 2003. 7 고시 개정(7차 개정)
 - 도축장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대장균 및 살모넬라 검사 규정 신설
 - HACCP 사후관리 기관을 시·도지사로 이관

- 2004. 1 :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

- 지정근거 마련

(현행) 도축장, 축산물가공장 →

(추가) 집유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 보관장, 운반업소, 판매업소

- 사후관리, 우대조치 등 규정

3. 지정대상

1) HACCP 적용 기준

가. 도축장에서의 지정

- 도축장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2항 및 동 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의

구분	1일 평균 도축실적	시행시기
소 도축장	100두 이상도는 정부지원 축산물 종합처리장	'00.7.1부터
	50~100두 미만	'00.7.1부터
	30~50두 미만	'00.7.1부터
	30두 미만(도서지역 제외)	'00.7.1부터
돼지 도축장	1,000두 이상 또는 정부지원 축산물 종합처리장	'00.7.1부터
	500~1,000두 미만	'00.7.1부터
	300~500두 미만	'00.7.1부터
	300두 미만(도서지역 제외)	'00.7.1부터
닭 도축장	100천수 이상	'00.7.1부터
	50천수~100천수 이상	'00.7.1부터
	300~500천수 미만	'00.7.1부터
	30천수 미만(도서지역 제외)	'00.7.1부터

*도축업 영업자가 동일 작업장안에서 소와 돼지 도축업을 같이 할 경우 시행시기는 축종 별 1일 평균 도축 실적 기준에 따라 축종별로 시행한다.

무 적용

나. 축산물가공장에서의 지정

- 축산물가공장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1항 및 동 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해 영업자가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

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품목에 따름.

- 식육가공장 : 햄류, 소시지류, 포장육, 양념육류, 분쇄가공육 제품
- 유가공장 : 우유류, 발효유류, 가공치즈, 자연치즈, 가공유류, 버터류, 저지방우유류, 아이스크림류

다. 기타 비고시 품목 등에서 적용

- 비고시 작업장(오리 등)이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

- 고시되지 아니한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하여는 동 고시 제18조(사전협의)에 의거 지정 가능

- 고시에 HACCP 관리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바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 시 사전에 검역원장과 협의하여 HACCP 관리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정

라. 소, 돼지, 닭 도축장이 여건 미비로 고시기간 후에 적용 할 경우

- 고시에서 정한 의무적용 기한이 경과하였는 바, “지정” 대신 이행 “확인” 여부로서 적용 인정

• 대상

- HACCP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부칙

(2001. 12. 31 개정) 제2조의 규정에 의거 HACCP 의무 적용 도축장 162개 소 중 2003. 7. 1일 기준 검역원으로부터 HACCP 적용 도축장으로 지정을 받은 83 개소 이외의 도축장

• 적용방법

- HACCP 시 · 도지사는 2003. 7. 1일 현재 미지정 도축장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 한 후 HACCP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도축장 59개 소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따라 경고 또는 영업정지 처분

※ 행정처분 내역

위반 업소수	위반행위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45개소	자체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을 작성 하지 아니한 때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2월	영업정지 3월
14개소	작성된 자체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	경고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월

- 고시의 “도축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실시상황 평가표”에 의한 점검 결과 및 이행여부 확인 후 시 · 도지사가 행정처분 또는 적용 확인서 발급

- 시 · 도지사로부터 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 확인서”를 발급받는 경우 축산물 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HACCP 작업장 인정

2)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른 HACCP 운용 계

획(2004. 1월 이후)

가. HACCP 지정 근거 마련 및 유인체계 구축
시행(법 제9조 보완)

<주요 내용>

- 도서벽지를 제외한 도축장은 HACCP 실시
- 집유장, 축산물가공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보관장, 축산물운반업소, 축산물판매업 소 영업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- 동 기준 적용 작업장 및 업소에 대한 지정 증명서류 발급
- 지정요건 ·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에서 규정
- HACCP 적용 영업자에게 기술 ·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.
-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
 - 집유의 기준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준수의무(제4조 5항)
 -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 · 운용의무(제8조 제2항)
 - 집유하는 원유에 대한 검사관 또는 자체 검사원의 검사(제12조 제2항)
 - 축산물가공영업자의 검사의무(제12조 제3항)
 -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의 처리 의무(제18조)
 - 판매 등의 금지(제 33조)
 - 암류 · 폐기 또는 회수명령(제36조 제1항 또는 제2항)

-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(당연 취소)
 -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작업장의 영업자는 동 기준 적용작업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.
- ※ 특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혼란 방지와 적용업체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신설
- 동 기준 적용 영업자에 대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 지원

나. 축산물가공품의 HACCP 적용 품목 개발 확대

- 축산물가공품은 현재 식육가공품 총 13개 품목에 대해 지정 운용하고 있으나, 13개 품목외 품목에 대한 지정요구 증가
- 따라서 13개 품목 외에 수요가 많은 품목에 대해 지정기준 마련
 - 예 : 알가공품 등

4. 사후관리 및 의무사항

1) HACCP 적용업체 자체관리

가. 개선조치

- 영업자는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위해요소의 허용한계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신속한 원인규명 및 적절한

조치를 취하고 이를 기록·보관

- 개선조치 내역은 기록문서로 남기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

나. HACCP 관리기록은 최소 2년간 보관. 단, 보관 등에 대하여 별도규정이 있으면 별도규정에 따름

- 기록관리는 효율적인 HACCP 시행에 있어 핵심사항으로 관련기록은 향후 재평가·검증의 중요한 근거가 됨.
- 기록은 가능하면 HACCP 훈련을 받은 자 또는 작업장 책임자가 기록하고 작성일자 명기 및 이름·서명하여야 함.
- 기록관리대상은 다음과 같음.
 - 작업장별 위생관리 기준
 - 위해요소 분석자료
 - HACCP 관리기준서(중요관리점, 허용한 계치, 감시방법,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의 설정 근거자료 포함)
 - CCP 감시기록(감시장비 교정기록 포함)
 - 개선조치기록(허용한계치 위반발생 시 조치 한 모든 기록 포함)
 - 검증기록
 - 관리책임자가 연 1회 이상 자체 실시하는 재평가 기록
 - 종업원 및 HACCP 팀 구성원의 HACCP 관련 교육·훈련 기록
 - 미검사품 및 검사불합격품 사후관리 기록
 - 위해축산물 회수기록
 - HACCP 적용 도축장에서 실시하는 대장균

(*Escherichia coli Biotype I*) 검사기록 및 살모넬라균(*Salmoenlla spp.*) 검사기록

다. HACCP 적용작업장의 관리책임자는 HACCP 적용을 총괄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.

- 기록관리는 종업원에 대하여 작업장 시설관리, HACCP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 훈련
- HACCP 팀 구성원들이 종업원에게 원료생산, 축산물의 처리·가공 및 유통에 관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관
- 작업장에서 운용 중인 HACCP 계획에 대하여 고시 [별표1]의 HACCP 계획점검표에 의거 재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
- 판매 위해요소의 분석 또는 HACCP 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재평가 실시
- HACCP 적용도축장은 미생물학적 검사요령에 의거 대장균(*Escherichia coli Biotype I*) 검사실시 → 미생물학적 검사요령

2) 검역원 및 관할 시·도 등에서의 관리

가. 검역원장/시·도지사는 직접 또는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으로 하여금 HACCP 적용작업장의 HACCP 실시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당해 작업장에서 HACCP가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파악

나. 검역원장 또는 시·도지사 등 감독 기관의 검증과 기준을 위한 심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, 축산물 위생 관련 연구기관·단체 및 HACCP 전문가·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음.

- HACCP 계획
- 중요관리점의 허용한계치
- 중요관리점 모니터링
- 개선조치
- 중요관리점에 대한 기록
- HACCP 실시기록
- 축산물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료의 검사
- 작업장에 대한 관찰기록
- 선행요건 프로그램

다. 검역원장은 전항의 심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적절한 HACCP로 간주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- 영업자가 HACCP 계획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
- 기록관리가 시행되지 아니한 때
-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·출하한 때
- 기타 규정을 위반한 때

라. 관할 시·도지사는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 실시

- HACCP 실시상황 평가표에 의하여 1년에 1

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 및 검역원장에게 보고

- 시·도지사는 자체 재평가 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시정지시, 교육·훈련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시·도지사는 HACCP 적용도축장에 대하여 미생물학적 검사요령에 의거 살모넬라균 (*Salmoenella spp.*) 검사실시 → 미생물학적 검사요령

5.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우대조치

1) HACCP 적용업체 우대조치

- 출입·검사·수거 등 완화
-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완화
- HACCP 적용품목 표시부착 및 HACCP 품목지정 사실에 대한 광고 허용
 -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에 한함.
- 작업장 출입구에 HACCP 적용작업장 표시 간판 부착 허용
- 정부의 축산정책자금 등 지원 가능
 - 도축장 HACCP 시설자금 및 컨설팅자금 지원내역

(단위:개소수, 백만원)

구분		'99	'00	'01	'02	계
시설	물량	10	15	15	10	50
자금	금액	3,500	5,250	5,250	3,500	17,500
컨설팅	물량	-	15	15	20	50
자금	금액	-	105	105	140	350
계	물량	10	30	30	30	100
	금액	3,500	5,355	5,355	3,640	17,850

2)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HACCP 적용업체 우대조치

- 2004. 1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라 그간 고시에서 운영하던 우대조치를 상위법인 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
- 또한 고시로 운영하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영업자만의 광고허용 규정을, 지정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동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화된 규정을 상위법인 법령에 규정 마련

III. 양계산물의 위생관리에 대한 제언

1) 도축·가공 등 닭고기의 취급에 관한 위생관리

- 닭고기는 지금까지 쇠고기나 돼지고기와 함께 위생관리에 대한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되며 관리되어 왔다. 최근 들어 소·돼지 도축·가공장이 대형화, 현대화되어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것과 아울러 닭도축·가공장도 세계적인 시설과 HACCP 등 위생 관리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. 한가지 다른 점은 소·돼지의 도축·가공장은 도축·가공장 중심의 영업자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며, 닭고기는 계열업체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다.

- 따라서 비계열 주체로서 도축·가공장을 운

영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, HACCP는 초기투자비용이 상당하여 HACCP의 확대 등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.

- 다만,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HACCP 적용 확대는 필요한 사항이므로 HACCP를 하고자 하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.

정부의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우대조치 등에 힘입어 최근에는 군납은 물론 집단 급식업소 등에서 납품 계약시 HACCP 적용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HACCP의 활성화의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느낌이다.

- 앞으로도 업체나 정부 모두는 소비자의 위생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제고하는 생산적인 위생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, 이를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시설 확충보다는 기존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위생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. C

※ 본고는 2004년도 한국가금학회 춘계 심포지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대균 사무관의 「닭도축장·계란집하장에 대한 HACCP적용」에 대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한 자료이다.